

한국은행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

I 개 요

한국은행 신입직원(종합기획직원 G5) 채용시 일반 부문에 지방인재의 채용목표인원(채용예정인원의 20%)을 설정하고 지방인재(일반 부문)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인재를 최대 10%까지 추가선발하는 제도

※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일반 부문에만 적용

II 용어의 정의

1. 지방인재의 개념

- 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(이하 “지방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

2. 지방학교 및 지방인재 해당여부

- ☐ 인사혁신처예규 제129호 「균형인사지침*」(2021.12.30)의 IV.2.나.지방학교 및 IV.2.다.지방인재 항목을 준용(<참고> “지방인재의 포괄범위” 참조)

*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- 법령·통계정보 - 법령정보 - 훈령/예규/고시

- ☐ 지방인재 해당여부는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

III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 상한

1. 전형단계별 채용목표인원

- ☐ 각 전형단계별(서류전형, 필기시험, 면접전형)로 지방인재를 추가선발하기 이전의 합격예정 총인원*에 20%를 곱한 인원수

* 5대 응시과목(경제학, 경영학, 법학, 통계학, 컴퓨터공학)의 채용기준인원 기준

2. 추가합격 상한

- ☐ 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 상한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예정 총인원의 10% 이내(소수 첫째자리 반올림)로 설정

IV

추가합격자 결정방법

1. 서류전형

- ☐ 서류전형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(20%)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
- ☐ 상기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(20%)에 미달하는 경우 과락기준을 면하고 취득점수가 '합격선 - 만점의 5%' 이상인 지방인재 지원자중 추가합격 상한(10%,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) 범위 내에서 목표미달인원(목표인원 - 지방인재 합격자)만큼 추가합격 처리함

2. 필기시험

- ☐ 필기시험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(20%)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
- ☐ 상기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(20%)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취득점수가
 - i) 매 과목(학술 및 논술) 만점의 40% 이상, 전과목 총점 50% 이상이고
 - ii) '합격선 - 20점' 이상인 지방인재 지원자중추가합격 상한(10%,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) 범위 내에서 목표미달인원(목표인원 - 지방인재 합격자)만큼 추가합격 처리함

3. 면접전형

- ☐ 1차 및 2차 면접전형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(20%)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
- ☐ 상기 합격자중 지방인재가 목표인원(20%)에 미달하는 경우 과락기준을 면하고 면접 점수가 '합격선 - 만점의 5%' 이상인 지방인재 지원자중 추가합격 상한(10%,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) 범위 내에서 추가합격 처리함

※ 문의: 한국은행 인사운영팀 채용담당 (☎ 02-759-5584, 5686)

<참고>

지방인재의 포괄범위

(인사혁신처예규 제129호, 「균형인사지침」, 2021.12.30.)

□ 지방인재의 개념

-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(이하 “지방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지방학교

: 본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에 위치한 대학 이하의 학교로 하며,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음
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규정된 학교로 지방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
 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은 지방학교에 포함
-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
 -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충남)
 -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 -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 -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제3사관학교(경북)
-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상의 “분교”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

《 예 시 》

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: 지방학교에 해당함
 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
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: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
 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가 아님

-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 그밖에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학교 중 지방에 소재하는 초등학교·공민학교,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

※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□ 지방인재

: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사람으로 아래와 같음

○ 다음의 지방대학 졸업(예정)자는 해당

- 「고등교육법」상의 지방학교와 과학기술대학을 졸업한 경우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

※ 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를 말함

○ 지방학교 중퇴가 최종학력인 사람

○ 지방대학 재학 또는 휴학자의 경우

-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지방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해당
-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서울지역대학 이외의 지역대학에서 전 기간을 수강중인 자는 해당

※ 서울소재대학 졸업 또는 중퇴 후 지방대학 편·입학자는 제외

○ 지방인재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지방학교일 경우 해당

-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 학위 취득자
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6조 내지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검정고시 합격자

○ 기타 지방인재에 해당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상의 초·중등교육 이하인 경우는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면제를 받는 등의 사유로 학력이 없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전체 기간의 1/2을 초과하는 사람
-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는 중퇴한 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지방소재지인 사람

○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서울소재 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- 지방소재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서울소재 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하거나 재학·휴학 중인 것으로 보아 지방인재에서 제외

《 예 시 》

<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 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(예정) : 해당

<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>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해당
 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<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>

- 서울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지방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- 지방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서울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: 비해당

<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>

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 -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해당
- ※ 단, 지방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인재에 해당

<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>

- 지방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: 해당
- 서울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의 경우 : 비해당

<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>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해당